

#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 ACA, ACA-RA, ACF, ACG-RA, ACG-RB, BLB, COB-RA, GCA-RA, GKA-RA, JEE-RA, JGA-RA, JHF, JHF-RA, JOA-RA, KBA, KBA-RC, KLA
담당 사무소:	Superintendent of Schools,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 Office of the 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s

## 교육감에게 보내는 우려, 민원 및 이의 제기 Concerns, Complaints, and Appeals to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 I. 목적

가능한 한 대중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협력적인 해결을 장려합니다.

다른 절차에 의해 주제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법률,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Board) 정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규정이나 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공 민원을 처리하고 신속하고 대응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 II. 배경

Montgomery County의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 제공은 모든 관계자가 함께 협력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정책적으로, 대중에게 질문과 우려사항을 가장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 학교 또는 행정 기관에 문의하도록 장려하며, 또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 간의 대화 및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권장합니다.

민원 제기의 공식적인 단계는 가장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실패하여 민원인이 법률,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이나 절차(이하 “규칙”)의 적용에 대한 MCPS 관리자의 검토를 원하거나, 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규칙의 적용을 요청할 때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사 조치는 MCPS 교육감의 전적인 권한이며 일반 민원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III. 정의

이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아래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단계의 우려사항이나 민원에 있어 *적절한 관리자*란 MCPS의 특정 행정 또는 운영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감의 지명자를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학교 교장*은 지역 학교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관리자입니다.

학교장의 결정은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SSWB)의 지역 책임자, OSSWB의 *최고 책임자* 또는 *지명자*가 검토합니다.

2. 지역 학교장의 책임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 및 기타 중앙 사무실/교육청의 적절한 관리자(예: 재정, 교통, 시설, 식품 및 영양, 커리큘럼 책임자)가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해당 사무실을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지명인이 검토합니다.

3. *교육감/지명인*은 교육감에게 항소된 최고 책임자/지명인의 결정을 검토하는 항소 부서입니다.

B. *교육위원회 옴부즈퍼슨*은 교육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공정한 개인으로, Montgomery County 커뮤니티 구성원이 MCPS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우려사항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옴부즈퍼슨은 우려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사람의 기밀을 보호하고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며 MCPS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 교육위원회 옴부즈퍼슨과 AskMCPS 콜센터는 일반인을 적절한 관리자에게 안내하고 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 문의나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 *Office of the Chief of Staff(OCOS)*은 일반인이 적절한 리소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OCOS 는 민원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대중이 자료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관리자에게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D. 일
1. *달력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메릴랜드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의 각 날을 의미합니다.
  2. *근무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메릴랜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MCPS 중앙 사무소/교육청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을 여는 날을 의미합니다.
- E. *민원* 이란 관리자의 규칙 적용이 해당 규칙에 위배되거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양식 270-8, *공개 민원* 또는 민원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우려사항, 우려사항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및 구제책이 포함된 서면 진술서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 *민원인*이란 담당 관리자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후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1.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본인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대중 구성원이란 현재 MCPS 학생, 현재 MCPS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또는 MCPS 행정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Montgomery County 거주민을 말합니다.
  3. MCPS 직원은 MCPS 규정 GKA-RA, *Administrative Complaint* 또는 *직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우려사항 해결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G. *연락*은 불만 사항에 제공된 이메일 주소 및/또는 전화번호로 수취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H. *회의*는 민원인과 해당 관리자와의 상담을 의미합니다. 회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대면, 가상 또는 유선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I. *규칙*은 법률,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또는 확립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 IV. 행정절차

##### A. 정보 요청

1. Office of the Chief of Staff(OCOS)는 AskMCPS 콜센터, MCPS 공보실, MCPS 웹페이지와 같은 다양한 소통 도구를 사용하여 대중 구성원에게 정보와 자료를 안내하고 대중이 공적 절차에서 민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자에 240-740-3015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웹페이지의 OCOS 불만 사항에는 담당 부서 및 최고 책임자/지명인이 확정된 검토 및 항소 절차가 지정된 주제 목록이 포함되며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학생 등록, 거주지, 수업료, 킨더가든 입학
  - b) 학교 배정 변경(COSA) 및 행정 배정을 포함한 학생 배정 학교
  - c) 학생 정학 및 퇴학
  - d) 학생 운동 면제
  - e)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및 504 계획
  - f) ADA 편의 시설(학생 504 계획 제외)
  - g) 타이틀 IX 성희롱 신고
  - h)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FARM) 및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3. 학교는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 웹사이트의 OCOS 불만 사항 링크를 포함시키고 학부모/보호자가 OCOS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MCPS 양식 270-8, *Complaint from the Public* 및/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 규정은 각 지역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학부모/후견인에게 뉴스레터로 공지하며 또한 적합한 학생 핸드북에 게재합니다.
4. 일반을 지원하는 기타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위원회 옴부즈퍼슨은 202-740-3030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b) 학부모 커뮤니티 코디네이터(PCC)는 학생의 학업 성공을 위한 가족의 역량을 지원하고 구축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MCPS 의 의사결정권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장 또는 옴부즈퍼슨을 통해 PCC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 언어 지원과 통역사 지원 서비스는 MCPS 통역 서비스 사무실([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240-740-1800) 을 통해 일반에게 제공됩니다.

5. OCOS 는 기록 보관 및 민원인 및 적절한 관리자와의 소통을 위한 전자 형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COS 는 요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 형태의 보고 양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 B. 문제 해결 방법 모색

정보 요청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대중 구성원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요청이나 우려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가 따릅니다:

### 1. 지역 학교의 우려사항

학급 문제 또는 지역 학교 운영과 관련된 기타 문제는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문의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a) 교사나 다른 교직원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은 학교장/대리인과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장하며, 학교장/대리인은 협력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b) 이 규정에 따라 이러한 비공식 절차에 대한 양식이나 공식 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장/대리인은 문제 또는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노력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특히 지원을 위해 다른 사무실에 의뢰한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2. 기타 MCPS 운영 또는 관리에 대한 우려사항

- a) 지역 학교 이외의 MCPS 문제와 관련된 우려사항의 경우, 일반은 옴부즈퍼슨, AskMCPS 콜센터, OCOS/지정인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문의나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습니다.
- b) 이 단계의 절차에서는 양식이나 공식 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리자는 개인과의 연락 기록과 문제 또는 우려사항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특히 지원을 위해 다른 사무실에 의뢰한 경우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C. 공개 절차의 불만 사항

학교장/디렉터의 규칙 적용이 해당 규칙에 위배되거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중 구성원은 OCOS에 연락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OCOS/지정인은 다음을 완료합니다:

- a) 불만 사항에 IV.A.2항과 관련된 우려사항(예: 학생 거주, COSA, 정학, IEP, 504, ADA 편의 제공 또는 괴롭힘)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OCOS/지정인은 해당 우려사항을 담당하는 지정된 사무실에 연락하도록 대중 구성원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대중 구성원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전에 섹션 IV.A.2에 나열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b) 일반인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장 또는 디렉터에게 아직 해결책을 찾지 않은 경우, OCOS/지정인은 해당 학교장 또는 디렉터를 옴부즈퍼슨, PCC, 통역 서비스 등의 지원 자원을 대중 구성원에게 안내합니다.

### 2. 대중 구성원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장 또는 디렉터에게 해결책을 모색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옴부즈퍼슨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OCOS/지정인은 불만 사항을 기록하여 다음 적절한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관리자는 다음을 완료합니다:

- a) 이의제기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OCOS 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항소인 및 OCOS 에 통지합니다.
- b) 사례 파일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장/디렉터의 대응 및 메모를 검토합니다.
- c) 불만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 일 이내에 해당 민원인과 미팅 일정을 잡습니다.
- d) 민원인의 미팅 후 근무일 기준 10 일<sup>1</sup> 이내에 -
  - (1) 불만 사항 조사;
  - (2)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3) 불만 사항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다루는 결정의 근거와, 결정의 근거가 된 주요 정보를 요약하며, 교육감/지정인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편지를 민원인에게 보냅니다; 또한
  - (4)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OCOS/지정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첨부 파일로 포함합니다.

- 3. MCPS 규정 GCA-RA, *Conflict of Interest* 는 교직원이 모든 학생, 학부모/보호자, 동료, 지역사회와 최대한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MCPS 교직원의 공정성과 독립적인 판단에 대한 최고의 공신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D. 교육감에게 항소하기

- 1. 최고 책임자/지정인의 규칙 적용에 대한 이의는 달력일 기준 15 일 이내에 교육구 운영/재심부서에 연락하여 교육감/지정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또한 불만 제기자는 필요한 기한 내에 최고 책임자/지정인이 조치를

---

<sup>1</sup> 민원이 복잡하거나 근무일 기준 10 일 이내에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관리자는 민원인에게 연장된 기한과 그 근거를 즉시 통지하는 조건으로 결정에 명시된 기한을 근무일 기준 10 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하지 않았고 민원인이 기한 연장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교육감/지정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항소부는 항소가 특히 복잡하거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추가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5 일 근무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a) 항소부는 45 일을 초과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항소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 일 이내에 항소인에게 통지합니다.
  - b) 연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10 일이 추가됩니다.
4. 항소부가 위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감이 위원회 항소의 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E. 검토와 보고

참모장은 매년 교육감에게 불만 사항의 주제, 불만이 제기된 기관 및 불만 처분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여 공개 절차에서 제기된 불만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 F. 기록 및 파일

1. 각 검토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는 해당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a) 제기된 우려사항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다루는 결정에 대한 근거와 함께, 결정이 내려진 주요 정보를 요약하며, 해당되는 경우 추가 검토 또는 항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서신을 항소인에게 발송합니다. 또한
  - b) 하위 단계에서 사건을 처리한 학교장/디렉터를 포함한 모든 관리자에게 서신 사본을 제공합니다.
2. 각 검토 단계의 해당 관리자는 민원인/항소인과의 서신, 다른 기관에 대한 의뢰서, 결정문, 결정의 근거가 된 주요 정보를 사건 파일에 보관합니다.



- a) 검토가 요청되면 다음 단계의 검토를 수행하는 관리자에게 사례 파일 사본이 제공됩니다.
  - b) 각 단계에서 사건 파일 기록은 사건의 해결 또는 기타 종결 후 36개월 동안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각 단계의 관리자의 선택에 따라 기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단, 불만 사항이 모든 기록에 대해 특별히 더 긴 보존 기간이 규정된 사안이나 주제와 관련된 경우 불만 기록에도 해당 긴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 c) MCPS 규정 JOA-RA, *Student Records* 에 명시된 대로, 관리자는 정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파일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일은 학생 기록이나 사례 파일의 일부가 아닙니다.
3. 이 규정에서의 기록의 보유 조항은 폐기 또는 보관 동의가 공식결정 절차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2.16

**규정 연혁:** 이전 규정 번호 270-9, 1972년 11월 3일; 디렉토리 정보 1983년 1월 업데이트, 1987년 8월 26일 개정, 1994년 5월 4일 개정, 1997년 11월 4일 개정, 2008년 7월 1일 개정, 2013년 10월 7일 개정, 2017년 7월 25일 개정, 2018년 7월 5일 개정, 2023년 10월 18일 개정; 비실질적 개정 2024년 3월 26일 개정.

#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기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http://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a href="mailto:SWC@mcpsmd.org">SWC@mcpsmd.org</a>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a href="mailto:DCI@mcpsmd.org">DCI@mcpsmd.org</a>
<b>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b>	<b>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b>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a href="mailto:504@mcpsmd.org">504@mcpsmd.org</a>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a href="mailto:DCI@mcpsmd.org">DCI@mcpsmd.org</a>
<b>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b>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a href="mailto:TitleIX@mcpsmd.org">TitleIX@mcpsmd.org</a>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mailto: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mailto: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mailto: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mailto: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